

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심 사 보 고 서

2026. 9. 7.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. 8. 12. 성북구청장 제출(의안번호 7호)

나. 회부일자: 2026. 8. 19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3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【2026. 9. 1 상정·원안가결】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한재헌 기획재정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에서 예수하여, 향후 세수 감소 등 재정여건 악화 시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
-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변경

나. 주요내용

- 기금설치 개요
 - 1) 설치근거 :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7조
 - 2) 설치목적 :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상 여유자금의 통합적 관리
 - 3) 설치연도 : 2020. 12. 31.
-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 - 1) 기금사업의 목표
 -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

○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기금사업 주요 변경개요

1) 기금변경규모 (단위 : 천원)

구 분	기정예산	변경예산	증감액
기금규모(수입·지출)	33,716,376	43,467,744	9,751,368

2)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

- 수입계획 변경 (단위 : 천원)

구 분	기정예산(A)	변경예산(B)	증감액(B-A)	증감내용
계	33,716,376	43,467,744	9,751,368	
예치금회수	33,338,650	33,335,824	△2,826	(감)202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변경
예수금수입	172,676	9,647,888	9,475,212	(증)일반회계 9,302,826천원 건축안전특별회계 17,092천원 주차장특별회계 155,294천원
이자수입	205,050	484,032	278,982	(증)예수금 수입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

- 지출계획 변경 (단위 : 천원)

구 분	기정예산(A)	변경예산(B)	증감액(B-A)	증감내용
계	33,716,376	43,467,744	9,751,368	
일반예치금	8,174,320	17,925,688	9,751,368	(증)예수금 증가에 따른 연도말 기금조성액 증가
예수금원금상환	25,542,056	25,542,056	0	통합계정→일반회계 원금상환

3) 2026년도말 기금조성액 (단위 : 천원)

조 성 액		사 용 액		2026년말 조성액(잔액)
43,467,744	-	25,542,056	=	17,925,688
· 예치금회수 : 33,335,824 · 예수금수입 : 9,647,888 · 이 자 수 입 : 484,032		예수금원금 상환 (통합계정 → 일반회계)		2027년도 이월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동성)

□ 개요

- 본 변경안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발생한 각 회계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수하고,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액 및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금의 수입·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.

※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¹⁾에 따라 각 회계·기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"통합기금"이라 한

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거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기금으로,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음.

□ 주요내용

- 수입계획은 당초 337억 1,637만원에서 434억 6,774만원으로 97억 5,136만원 증액하는 것으로, 각 회계의 여유재원 예수금(94억 7,521만원)과 이자수입(2억 7,898만원) 등을 반영하는 내용임.
- 예수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발생한 일반회계(93억 283만원) 및 특별회계(건축안전특별회계 1,709만원, 주차장특별회계 1억 5,529만원)의 여유재원을 통합계정에 예수하는 것임.
- 지출계획은 수입 증가분을 일반예치금으로 반영하여 일반예치금을 97억 5,136만원 증액하고, 예수금 원금상환액은 당초 계획을 유지하는 것임.
- 이에 따라 정책사업인 일반예치금이 당초 81억 7,432만원에서 179억 2,569만원

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**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**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(이하 이 조에서 “예수금”이라 한다)

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③ 통합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
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3.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
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.

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로의 전출
2. 지방채 원리금 상환

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20. 6. 9.]

으로 97억 5,136만원(119.3%) 증액되어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%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임.

□ 종합의견

- 이상과 같이 본 변경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발생한 각 회계의 여유재원을 통합계정에 예수하여 일반예치금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, 각 회계·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통합계정의 설치 목적과 운용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예수금은 향후 해당 회계에 상환하여야 할 자금인 만큼 각 회계의 자금수요와 상환계획을 고려하여 예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「생 략」

5. 토론요지 : 「생 략」

6. 심사결과 : 「원안가결」

2026년도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심 사 보 고 서

2026. 9. 7.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. 8. 12. 성북구청장 제출(의안번호 10호)

나. 회부일자: 2026. 8. 19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3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【2026. 9. 2 상정·원안가결】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박홍진 안전생활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2026년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학자금 대여 사업비 증액 편성을 위하여 2026년도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○ 기금설치 개요

- 1) 설치근거 :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21조
- 2) 설치목적 :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
- 3) 설치연도 : 1991. 4. 8.

○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1) 기금사업의 목표

- 공무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해줌으로써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에 기여

○ 2026년도 기금사업

1) 2026년 1학기, 2학기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

○ 2026년도 기금사업 주요 변경 개요

1) 기금변경사유 : 2026년 학자금 대여 수요 증가에 따른 학자금 대여 사업비
24,000천원 증액 편성

2) 기금변경규모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기정예산	변경예산	증감
기금규모(수입 · 지출)	1,891,774	1,891,774	0

3)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

- 수입계획 변경 : 변경사항 없음
- 지출계획 변경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기정예산(A)	변경예산(B)	증감액(B-A)	증감내용
계	1,891,774	1,891,774	0	
융자성사업비	48,000	72,000	24,000	2026년 학자금 대여 사업비 증가
비용자성사업비	900	900	0	
예치금	1,842,874	1,818,874	-24,000	융자성사업비 증가로 예치금 감소

4) 2026년도 기금조성(안)

(단위 : 천원)

조 성 액	사 용 액	2026년말 조성액
1,891,774	72,900	1,818,874
- 25년도말 예치금회수 : 1,797,585	- 공무원자녀학자금 대여 : 72,000	= 2027년도로 이월
- 26년 융자금 회수 : 16,949	- 위원회 운영 등 : 900	
- 이자수입 : 77,240		

다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동성)

□ 개요

- 본 변경안은 2026년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 수요 증가에 따라 융자성사업비 2,400만원을 증액하고자 2026년도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임.

※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공무원 자녀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1991년 설치된 기금으로,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21조²⁾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.

2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21조(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) ① 구 소속 공무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(이하 이 조에서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 (개정 2020.12.31, 2021.10.6.)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. (개정 2020.12.31.)

1. 일반회계 전입금 (개정 2020.12.31.)
2. 대여기금 상환금
3.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(개정 2020.12.31.)

③ 제1항의 기금은 구 소속 공무원의 자녀로서 2년제 이상의 대학(대학교를 포함한다)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(이하 "대학생"이라 한다)의 학자금 대여에 사용한다. (개정 2008. 10. 30, 2020.12.31, 2021.10.6.)

④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여기준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정하는 국고 대여장학금의 대여금을 준용

□ 주요내용

- 본 변경안은 학자금 대여 수요 증가에 따라 융자성사업비를 당초 4,800만원에서 7,200만원으로 2,400만원 증액하고, 이에 필요한 재원은 기금 내 예치금에서 충당하는 것으로, 기금운용 규모의 변동 없이 지출계획을 조정하는 것임.
- 이에 따라 정책사업인 융자성사업비는 당초보다 2,400만원(50.0%) 증액되어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%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임.

□ 종합의견

- 이상과 같이 본 변경안은 공무원 자녀의 학자금 대여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융자성사업비를 증액하려는 것으로,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이라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고 사업 추진의 필요성도 인정됨.
- 또한 추가 소요재원을 기금 내 예치금에서 충당하여 기금의 전체 운용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며, 기금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재원 운용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학자금 대여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학자금 대여 실적과 수요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의 사업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「생 략」

5. 토론요지 : 「생 략」

6. 심사결과 : 「원안가결」

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심 사 보 고 서

2026. 9. 7.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. 8. 12. 성북구청장 제출(의안번호 16호)

나. 회부일자: 2026. 8. 19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3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【2026. 9. 1. 상정·원안가결】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임근수 행정지원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2025년 고향사랑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(수입)·예치금(지출) 증가로
2026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○ 기금설치 개요

- 1) 설치근거 :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30조
- 2) 설치목적 :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으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마련
- 3) 설치연도 : 2023. 7. 13.
- 4) 기금의 용도
 -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·보호
 - 지역주민의 문화·예술·보건 등의 증진
 - 시민참여,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
 - 그 밖에 주민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

○ 2025년 고향사랑기금 규모

(단위: 원)

전년도말 조성액 ㉠	당해연도 증감액			당해연도 말 조성액 (㉡ = ㉠ + ㉢)
	계 ㉢ = ㉣ - ㉤	조성액 ㉣	사용액 ㉤	
119,837,005	61,887,001	63,007,001	1,120,000	181,724,006

○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개요

1) 운용계획 변경 사유

① 수입부문

- 전년도까지 조성된 기부금 및 이자발생액 증가로 이에 따른 예치금회수액 증가
(증 48,138천원)
- 올해 기부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로 이자수입액 변경
(증 1,295천원)

② 지출부문

- 2026년 기금사업인 ‘나는 성북인이다’ 미시행으로 인한 지출계획 변경
(감 45,000천원)
- 예치금회수 수입 증대에 따른 예치금 반영 및 비용자성사업비 감액에 따른
예치금 증가 (증 94,433천원)

2)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

- 자금수지 총괄

(단위: 천원)

2026년 수입계획				2026년 지출계획			
항 목	당초 수입액	변경 수입액	증 감	항 목	당초 지출액	변경 지출액	증 감
합 계	204,633	254,066	49,433	합 계	204,633	254,066	49,433
전입금	-	-	-	비용자성사업비	86,600	41,600	△45,000
보조금	-	-	-	융자성사업비	-	-	-
차입금	-	-	-	인력운영비	-	-	-
융자금회수 (이자 포함)	-	-	-	기본경비	-	-	-
예탁금원금회수	-	-	-	예탁금	-	-	-
예치금회수	133,586	181,724	48,138	예치금	118,033	212,466	94,433
예수금	-	-	-	차입금원리금 상환	-	-	-
이자수입	6,047	7,342	1,295	예수금원리금 상환	-	-	-
기타수입	65,000	65,000	-	기타지출	-	-	-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및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)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 등에 관한 조례」 제13조
(고향사랑기금의 설치)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30조(고향사랑기금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동성)

□ 개요

- 본 변경안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 결과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및 이자수입 증가분과 2026년도 기금사업 미시행을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임.

※ 고향사랑기금은 「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30조³⁾에 따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·운영되고 있음.

- 3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30조(고향사랑기금) ①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(이하 이 조에서 “고향사랑 기부금법”이라 한다) 제11조에 따라 모금·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고향사랑기금(이하 이 조에서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- ②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·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
 2.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 3.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-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고,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.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
1.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·보호
 2. 지역 주민의 문화·예술·보건 등의 증진
 3. 시민참여,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
 4. 그 밖에 주민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
- ④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액 중 일부를 홍보비, 인쇄비,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□ 주요내용

- 수입계획은 당초 2억 463만원에서 2억 5,406만원으로 4,943만원 증액하는 것으로, 2025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4,814만원과 이자수입 129만원을 증액 반영하는 것임.
- 지출계획은 2026년 기금사업인 「나는 성북인이다」가 미시행됨에 따라 비융자성 사업비 4,500만원을 감액하고, 수입 증가분과 미집행 사업비를 일반예치금으로 조정하는 것임.
- 이에 따라 정책사업인 일반예치금은 당초 1억 1,803만원에서 2억 1,247만원으로 9,443만원(80.0%) 증액되며, 이는 당초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%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임.

□ 종합의견

- 이상과 같이 본 변경안은 기금 결산 결과 확정된 예치금 회수액 및 이자수입 증가분과 사업 미시행에 따른 사업비 감액을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실제 운용상황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,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됨.
- 다만,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되는 만큼, 향후 기금사업 선정 시 사업의 적정성과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금이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「생 략」

5. 토론요지 : 「생 략」

6. 심사결과 : 「원안가결」

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심 사 보 고 서

2026. 9. 7.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. 8. 12. 성북구청장 제출(의안번호 19호)

나. 회부일자: 2026. 8. 19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3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【2026. 9. 1. 상정·원안가결】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임근수 행정지원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경륜·경정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관내 경륜·경정장 수익금 배분으로 인한 수입 증액
- 소규모 체육시설 개선 및 생활체육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

나. 주요내용

- 기금설치 개요
 - 1) 설치근거 :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14조(체육진흥기금)
 - 2) 설치목적 :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 체육활동 지원
 - 3) 설치연도 : 2003. 3. 17.
-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 - 1) 기금사업의 목표: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구민 체육활동 증진
 - 2) 2026년도 기금사업 개요
 -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 체육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지원
 -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등

○ 2026년도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사업 주요 변경 개요

1) 기금변경규모

(단위: 천원)

구 분	기정예산	변경예산	증감액
기금규모(수입·지출)	928,239	1,143,268	215,029

2)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

- 수입계획 변경

(단위: 천원)

구 분	기정예산(A)	변경예산(B)	증감액(B-A)	증감내용
계	770,000	985,029	215,029	
사용료수입	570,000	690,000	120,000	체육시설 사용료 수입
기타수입	200,000	295,029	95,029	경륜 경정 수익금

- 지출계획 변경

(단위: 천원)

구 분	기정예산(A)	변경예산(B)	증감액(B-A)	증감내용
계	928,239	1,143,268	215,029	
비용자성 사업비	786,850	965,010	178,160	체육회장 선거 추진 지원 (증)30,000천원
				성북구체육회 직급비 (증)8,400천원
				성북구체육회 사업비 지원 (증)20,000천원
				구민체육대회 지원 (증)10,000천원
				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(증)99,760천원
				소규모체육시설 개선 공사 (증)10,000천원
기타지출	0	9,869	9,869	2025 신나는주말체육 국고보조금 반환
예치금	141,389	168,389	27,000	수입·지출 변경에 따른 예치금 증액

3) 2026년도말 기금조성(안)

(단위: 천원)

조 성 액		사 용 액		2026년말 조성액
1,143,268		974,879		168,389
· 예치금회수 : 150,239	-	· 일반 운영비 : 10,000	=	2027년도 이월
· 이 자 수 입 : 8,000		· 민 간 이 전 : 875,879		
· 기 타 수 입 : 985,029		· 시설비및부대비 : 80,000		
		· 민간자본이전 : 9,000		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동성)

□ 개요

- 본 변경안은 「경륜·경정법」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관내 경륜·경정장 수익금 배분으로 인한 수입 증가분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, 이를 재원으로 소규모 체육시설 개선 및 생활체육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임.

※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과 경륜·경정 수익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.

□ 주요내용

- 본 변경안에 따라 기금의 수입·지출 규모는 당초 9억 2,824만원에서 11억 4,327만원으로 2억 1,503만원 증가한 것으로,
- 수입계획은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이 1억 2,000만원 증가하고, 경륜·경정 수익금이 9,503만원 증가하여 총 2억 1,503만원 증액하는 것임.
- 지출계획은 비용자성 사업비를 1억 7,816만원 증액하여 체육회장 선거 추진 지원, 구민체육대회, 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, 소규모체육시설 개선 등에 활용하고, 기타 지출에는 2025년 신나는주말체육 국고보조금 반환금 987만원을 반영하는 것임.
- 이에 따라 정책사업인 생활체육 추진의 지출금액은 당초 7억 8,685만원에서 9억 6,501만원으로 1억 7,816만원(22.6%) 증액되며, 당초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%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제2항4)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임.

□ 종합의견

- 이상과 같이 이번 변경안은 경륜·경정 수익금 및 체육시설 사용료 등 자체재원 증가분을 활용하여 체육회 지원, 생활체육대회, 대회 출전 지원 및 소규모 체육시설 개선 등 체육진흥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것으로,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「생 략」

5. 토론요지 : 「생 략」

6. 심사결과 : 「원안가결」

4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 7. 24.>